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자연장지의 조성 등) 및 제17조(묘지 등의 설치 제한) 규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26.05.22. ~ 2026.06.06.(15일간)

2. 공고내역

성명	대상 소재지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처분내용	법적근거
김○란	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산40-8	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(자연장지의 조성 등) 및 제17조 (묘지 등의 설치 제한)을 위반하여 자연장지 조성	이전명령	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(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)
황○주				
고○재				
박○순				

3. 공고방법: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

4. 유의사항

- 상기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규정 위반자는 서면, 컴퓨터, 통신, 구술 또는 FAX(031-8075-4918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,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양시 노인복지과(☎ 031-8075-330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5월 22일

고 양 시 장